승인(협의)번호
제 34005 호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Survey on Wages by occupation of SMEs

2009. 12

Kbiz 중소기업중앙회

목 차

Ⅰ. 조사개요 ····· 1

Ⅱ. 조사결과 ····· 9

1. 표본기업의 일반특성 ····· 9

2. 제조부문 생산직 평균조사노임(일급) ····· 10

가. 생산직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일급) 요약 ····· 10

나.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11

다. 조사노임 적용요령 ····· 12

라. 생산직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일급) ····· 14

3. 중소제조업 임금현황 ····· 22

Ⅲ. 부 록 ····· 27

◇ 통계표 ····· 27

◇ 조사표 ····· 36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매년 9월중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2. 조사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5호)

3.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 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수 확대(850개업체 → 1,000개업체), 조사대상 변경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 → 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조사대상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수 확대(1,000개업체→1,200개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2008. 9 조사항목 변경(통계청 승인) : 폐지 2개(연봉제, 성과배분제), 조사직종 신설 : 골판지제조공
※구매기관 대상「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를「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로 변경
○ 2009. 9 조사항목 변경 : 폐지 1개(초음파절단공)

4. 조사기간

○ 조 사 기 준 일 : 2009. 9. 30
○ 조사 대상기간 : 2009. 9. 1 ~ 9. 30
○ 조사 실시기간 : 2009. 10. 1 ~ 11. 6

5. 조사범위 및 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상시종사자 20~299인 중소제조업 24,958개 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업종은 제외)

○ 조사대상
- 모집단 24,958개 기업체 중 중소제조업 1,200개 표본 기업체

6. 조사항목

○ 일반사항(기업유형, 노조유무), 임금산정기준, 9월급여 등
○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8. 표본설계

○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의 2007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결과중 종사자 20~299인 중소제조업체를 산업중분류별(23개), 종사자 규모별(3개)로 구분하여 표본틀 구성

○ 추출단위 : 기업체(Enterprise)

○ 층화기준 : 산업중분류별(23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종사자규모별 (3개)로 2차 층화

- 산업중분류별 층화기준 :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종사자규모별 층화기준
  1규모(20~49인), 2규모(50~99인), 3규모(100~299인)

○ 표본수 결정

- 기업체 연간급여액을 이용하여 Neyman의 최적배분법에 의하여 상대허용오차(ε) 0.11, 신뢰수준 95%로 산업중분류별 종사자규모별로 표본기업체수 결정

- 표본기업체수 결정공식

① 한국표준산업 중분류별 표본기업체수 결정

$$n = \frac{(\sum N\sigma)^2}{(\frac{\varepsilon}{t_\alpha} \times \sum X)^2 + \sum N\sigma^2}$$

② 종업원규모별 표본기업체수 결정 : $n_s = n \times \frac{N\sigma}{\sum N\sigma}$

< 기호설명 >

n: 한국표준산업중분류별 표본기업체수

n_s: 한국표준산업중분류별, 종업원규모별 표본기업체수

N: 모집단 기업체수

X: 각층의 기업체 급여액 (평균급여액)

σ: 기업체 평균급여액의 표준편차

σ^2: 기업체 평균급여액의 분산

$\frac{\varepsilon}{t_\alpha}$: ε 상대허용오차 t_α 신뢰수준

9. 자료처리

○ SAS를 이용한 빈도, 교차 및 평균 분석

10. 모집단 및 표본기업체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1규모 (20-49인)		2규모 (50-99인)		3규모 (100-299인)	
KSIC	N	n	N	n	N	n	N	n
합계	**24,958**	**1,200**	**17,717**	**475**	**4,600**	**277**	**2,641**	**448**
10.식료품	1,577	77	1,083	27	329	15	165	35
11.음료	92	26	57	12	22	11	13	3
13.섬유제품(의복제외)	1,326	48	979	21	244	13	103	14
14.의복,악세사리,모피	989	80	729	39	170	21	90	20
15.가죽,가방및신발제품	259	45	200	22	42	15	17	8
16.목재및나무제품	232	34	200	21	19	6	13	7
17.펄프,종이및종이제품	601	54	436	19	101	13	64	22
18.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412	40	338	24	47	11	27	5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47	6	34	3	13	3	0	0
20.화학물질및화학제품	943	73	642	22	178	21	123	30
21.의료용물질및의약품	2,543	42	109	5	83	15	62	22
22.고무제품및플라스틱	2,162	54	1,586	26	380	13	196	15
23.비금속광물제품	872	59	672	28	123	12	77	19
24.1차금속	1,054	61	709	21	211	18	134	22
25.금속가공제품	3,121	61	2,453	34	451	12	217	15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	2,038	69	1,272	18	423	20	343	31
27.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679	50	484	21	111	14	84	15
28.전기장비	1,540	62	1,094	20	295	16	151	26
29.기타기계및장비	3,421	51	2,533	23	625	11	263	17
30.자동차및트레일러	1,730	66	1,074	15	393	17	263	34
31.기타운송장비	798	55	368	15	243	13	187	27
32.가구	481	45	408	30	49	7	24	8
33.기타제품	330	42	257	21	48	11	25	10

주 : N은 모집단 기업체수, n은 표본 기업체수

11. 주요 용어 정의

□ 평균 조사노임(일급)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이 포함.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09년 9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수당)을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총 근로일수로 나눈 평균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직종별 총지급액)/(직종별 총근로일수)

- 1일 근로시간은 정상근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급여체계

○ 기본급

- 급여산정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이며

  · 위험수당은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생산장려수당은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자격수당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소지자에게 매

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근속수당은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임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예) 통근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급여총액

-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 초과근로수당,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의 합계액이나, 조사결과 분석에서의 월급여액에는 특별급여(상여금, 성과급 등)를 제외하였음

□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 사무직 및 기타

- 생산직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대표자(임원),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임금산정 기준(단위)

○ 시급

- 1시간을 단위로 임률(임금산정의 기준)을 정하고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지급

○ 일급

- 1일을 단위로 임률을 정하고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계산·지급

○ 주급

- 1주를 단위로 임률을 정하고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계산·지급

○ 월급

- 임금이 월단위로 정하여져 있고 결근일수 등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임금을 산정·지급

○ 연봉

- 근로자별 능력, 성과(실적),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연간단위로 임금을 결정·지급

Ⅱ. 조사결과

1. 표본기업의 일반특성

○ 종사자 규모별 표본은 종사자 20인~49인규모 기업이 40.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00인~299인규모 기업이 33.8%, 50인~99인규모 기업이 25.6% 순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는 일반기업이 77.7%, 혁신형기업 22.3% 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이 84.0%로 노동조합이 있은 기업 16.0% 보다 높게 나타남

표본기업의 일반특성

(단위 : 개, %)

구 분		업체수	비 중
중소제조업		1,200	100.0
종사자규모별	20~49인	487	40.6
	50~99인	308	25.6
	100~299인	405	33.8
기업유형별	일반기업	932	77.7
	혁신형기업	268	22.3
노동조합 유무별	노동조합 유	192	16.0
	노동조합 무	1,008	84.0

주 :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2. 제조부문 생산직 평균조사노임(일급)

가.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09. 9월중 중소제조업(20~299인, 1,2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일급)을 기본급 성격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7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54,638원으로 전년(52,388원) 대비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을 보면 보통인부 49,430원, 작업반장 72,019원, 제품출하공 54,175원, 제품검사공 47,972원, 물품포장공 46,978원, 품질관리공 62,606원, 부품조립공 48,434원, 기계정비공 62,872원, 용접공 65,789원, 프레스공 50,536원 등으로 조사됨.

- 상위 10개 직종

① 컴퓨터H/W기사 108,674원 ② 컴퓨터 S/W기사 97,376원 ③ 컴퓨터운용사 92,631원 ④ 기계설계사 91,652원 ⑤ 안전관리사 85,469원 ⑥ 품질관리사 83,467원 ⑦ 전기기사 82,417원 ⑧ 전기산업기사 80,193원 ⑨ 차량정비공 77,790원 ⑩ 제도사 77,076원

- 하위 10개 직종

① 빠데도포공 40,232원 ② 인타로그공 40,273원 ③ 하침공 41,468원 ④ 회전쇠톱공 43,375원 ⑤ 상침공 43,871원 ⑥ 스냅공 44,339원 ⑦ 이본침공 44,535원 ⑧ 연사공 45,344원 ⑨ 철강포장공 45,669원 ⑩ 재봉기운용사 45,888원

나.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이 포함됨.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09년 9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수당)을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총근로일수로 나눈 평균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직종별 총지급액)/(직종별 총근로일수)
-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79개 직종의 가중평균임.

○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 종사자에서 제외

○「※」 표시는 조사업체가 4개 미만인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ㅡ」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으로 전체평균 일급에는 미 계산함.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0. 1. 1(공표일)

다. 조사노임(일급) 적용요령

1)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2) 원가계산을 할 때 노무비 적용기준

□ 예정가격작성 기준 (회계예규 2200.04-160-5, 2008. 12. 29)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라.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일련번호	직 종 명	2009.9월 조사노임	2008.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	기계설계사	91,652	83,750	- 기계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
2	회로설계사	74,971	68,113	- 성능과 기능을 갖는 기계의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3	제도사	77,076	73,008	- 설계도면을 그리는 사람
4	현도사※	73,565	70,833	- 기계 또는 기구의 모양을 그리는 사람
5	강판공	66,137	64,540	- 강판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6	드릴공	52,805	49,753	- 드릴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7	로구로공※	54,403	54,335	- 로구로기로 제품을 가공하는사람 (로구로기 : 볼트 및 낫트류를 가공하는 기계)
8	마킹공	63,713	59,006	- 제작도면을 치수에 의거하여 가공부위에 선 또는 점을 표시하거나 금긋기하는 사람
9	밀링공	55,237	55,178	- 밀링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10	보링공	52,154	52,094	- 보링기로 피스톤 등을 보링·가공하는 사람
11	볼반공※	48,882	-	- 볼반기로 제품의 구멍을 가공하는 사람으로서 수동 및 다축판이 이에 분류된다. (볼반기: 드럼을 회전시켜 피가공물에 대고 늘려서 구멍을 뚫는 공작기계)
12	샤링공	59,633	56,904	- 철판을 샤링기로 스트립(strip) 또는 조각(parts)으로 절단하는 사람
13	쉐파공※	51,707	51,760	- 쉐파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피가공물의 평면 또는 홈을 가공한다.)
14	스롯타공※	49,590	47,260	- 스롯타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15	절곡공	56,973	54,867	- 수동으로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16	제금공	54,310	50,814	- 금,은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17	주물공	51,975	51,789	-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으로 주물품을 제조하는 사람
18	단조공	54,694	54,880	- 주조물에 의하거나 수동으로 함마질 하여 철 또는 비철금속을 단조하는 사람
19	금형공	65,710	61,483	- 금형을 제작하는 사람
20	목형공	59,550	58,192	- 목형을 제조하는 자와 토형제조자도 이에 분류한다.(주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목재로 소요의 형을 만들어 흙으로 목형에 주입시켜 건조시킨후 주물형에 넣어 용해된 주물을 주입시켜 제조한다.)

(단위 : 원)

일련번호	직 종 명	2009.9월 조사노임	2008.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21	조형공	54,321	50,956	- 주물을 만들고 쇠물을 붓기 위하여 모체로 모형을 만드는 사람
22	압연공	55,323	51,123	- 압연기에 의하여 압연가공하는 사람 (쇠를 강하게 하기위하여 단조하고 있으나 피가공물이 봉재, 선재, 판재 등의 용도에 따라 단조, 압연, 인발, 압출 등으로 구분 가공한다)
23	압출공	54,436	55,067	- 압출기에 의하여 인발 가공하는 사람
24	열처리공	56,996	53,061	- 용도에 따라 쇠를 열에 의하여 경하게 하거나 연하게 하는 사람(고주파처리,유열처리, 냉각수열처리, 자열온도열처리 등이 있다.)
25	용해공	58,140	51,329	- 철 또는 비철금속을 주조하기 위하여 용해하는 사람
26	인발공	49,629	50,388	- 인발기에 의하여 인발 가공하는 사람
27	태핑공	57,269	51,960	- 볼트, 낫트, 기타물체에 탭(tap)을 가공하는 사람
28	판금공	63,525	63,403	- 강판 또는 철판 등으로 제조된 제품의 부분 보수를 행하는 사람
29	합금공※	55,737	50,336	-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합금하는 사람
30	제정공※	54,189	47,288	- 철선을 제정기로 자르는 일을 하는 사람
31	다이케스트공	47,434	47,861	- 합금물을 용해하여 금형에 고압으로 주입시켜 주조하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류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32	철물재단공※	49,120	47,498	- 철물을 수동으로 절단하는 사람
33	철물재단사※	56,535	55,451	- 철물제품의 장척과 소요재료를 재단하는 사람
34	금속쇠톱공※	60,899	57,402	- 금속을 절단하는 쇠톱으로 회전시키며 수동으로 절단하는 사람
35	회전쇠톱공※	43,375	43,810	- 실쇠톱을 수동으로 회전시키며 절단하는 사람
36	모형조각기공※	55,798	56,489	-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의 모형대로 가공하는 사람
37	가위절단공	48,885	48,166	- 가위로써 물체를 절단하는 사람

(단위 : 원)

일련번호	직 종 명	2009.9월 조사노임	2008.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38	모형절단공	49,531	46,027	- 실쇠톱이 부착된 자동금속(쇠톱)기로 절단하는 사람
39	방전절단공	68,178	61,377	- 방전기의 등유에 전극과 공작물을 침유시켜 침전하면서 가공하는 사람
40	산소절단공	57,606	50,970	- 후철판 또는 봉재 등을 가스와 산소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41	알루미늄절단공	52,509	48,234	- 알루미늄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사람
42	유리절단 및 재단공	58,974	57,069	-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하는 사람
43	벤딩머쉰공	57,494	54,067	- 절곡기로 물체를 절곡하는 사람
44	벨런스머쉰공※	59,420	60,417	- 밸런스머쉰기로 왜곡된 물체를 교정하는사람
45	수동교정공※	58,326	60,040	- 수동으로 물체를 함마질(단금)하여 교정하는 사람
46	수동선반공	58,899	59,246	- 수동선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바이트라고하는 절물을 피가공물에 용적시켜 회전하면서 외경, 내경, 단면등을 가공한다)
47	자동선반공	52,689	53,125	- 자동선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피가공물의 취부에서 푸는 것 까지 자동적으로 행하여 봉재나 와이어버를 취부해 두면 가공되어 자동적으로 절단하는 공작기계이다.)
48	프레나공	63,912	62,838	- 프레나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평삭반이라고도 하며 피가공물의 평면홈 측면을 가공한다.)
49	프레스공	50,536	47,348	- 프레스기로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주로 절단, 절곡, 구멍뚫기,수축 등을 말한다.)
50	레이저광선공	55,153	50,346	- 레이저광선(전자파)을 공작물에 비추어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51	일반화학공	65,833	67,767	- 화공약품의 첨가 또는 배합을 하여 가공하는 사람
52	요업공	51,561	49,828	- 비금속무기물질을 원료로하여 가마를 이용, 열처리 공정을 거쳐 제품을 만드는 사람
53	도자기제품제조공	46,044	47,197	-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54	합성수지피막공	55,531	47,975	- 합성수지로 물체의 표면에 피막·시공하는 사람
55	권취공※	47,815	50,419	- 완성된 케이블을 조장별로 권취 또는 외관상의 검사를 하는 사람
56	대연공※	60,893	61,008	- 전선을 대연하는 사람
57	신선공	50,087	50,496	- 철 및 비철금속으로 제작된 신선용 "바"에서 용도에 따라 세선으로 신선하는 사람

(단위 : 원)

일련번호	직 종 명	2009.9월 조사노임	2008.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58	연선공	52,282	50,024	- 철 및 비철금속의 선을 연합하여 동심 또는 상호반대 방향을 연선하는 사람
59	연합공	59,755	62,046	- "유닛트"성형, 콰드 등을 연합하는 사람
60	절연공	59,508	61,717	- 고무테이프 절연지, 외권지, 방부성, 혼합물 등으로 절연을 시공하는 사람
61	피복공	56,449	56,754	- 금속 또는 절연체로 케이블의 외피 또는 외장을 하는 사람(알루미늄강대, 철선 외장도 이에 분류한다.)
62	케이블제조공	55,486	51,335	- 케이블 제조기술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63	고무제품제조공	49,420	45,667	- 생고무, 합성고무등을 배합하여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람(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화학공에 분류한다.)
64	리벳공	50,331	48,286	- 철 또는 비철금속으로 제조된 리벳으로 식판등의 접합을 목적으로 리벳팅하는 사람
65	용접공	65,789	64,814	- 전기, 산소등에 의하여 용접하거나 땜질하는 사람
66	그라인더공	57,746	59,152	- 지석 등을 전동기 또는 수동기에 부착시켜 그라인더 하는 사람
67	랍핑공	56,164	51,409	- 랍핑기에 의하여 소형금속판의 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68	빠데도포공※	40,232	40,074	- 페인트류 도장전 처리로써 흙과 연분에 흡합하여 철판면에 도포하여 건조석 사지로 손질하고 그위에 페인트를 흡부하는 사람
69	빠후공	46,935	46,026	- 물체의 표면에 빛을 내거나 때를 위하여 연마 가공하는 사람
70	사지공※	47,201	48,771	- 사지(샌드페이퍼,물페이퍼)로써 물체를 연마하는 사람
71	세척공	52,823	53,191	- 물체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각종세척 재료에 의하여 세척하는 사람(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세제 등이 있다)
72	호닝공※	46,737	47,660	- 호닝기에 의하여 금속표면을 다듬질 가공하는 사람
73	도장공(붓칠)	52,840	47,867	- 도장재료를 붓칠로 도장하는 사람
74	도장공(취부)	57,709	56,661	- 도장재료를 취부기구에 의하여 도장하는 사람
75	목장도장공	48,414	44,916	- 목공 또는 가구공이 제품한 제품명에 도장하는 사람

(단위 : 원)

일련번호	직 종 명	2009.9월 조사노임	2008.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76	전해연마공	48,228	46,552	- 양극과 음극을 접근시켜 전해액으로 저 전압을 통해서 공작물을 제조하는 사람
77	지석연마공	51,834	51,465	- 지석을 수동으로 물체를 연마하는 사람
78	콤파운드연마공	46,929	45,750	- 콤파운드에 의하여 표면가공의 전처리로 연마하는 사람
79	화학연마공	50,611	50,290	- 금속표면을 화학약품 용해에 침전시켜 가공하는 사람
80	아연도금공※	48,108	47,253	- 화학처리된 금속에 아연을 도색하는 사람
81	전기도금공	49,583	48,859	- 각종 물체의 표면처리하는 도금을 전기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람
82	침적도금공	50,286	48,984	- 각종 물체의 표면처리하는 도금을 원재료를 용해해서 가공물을 담구어 도금하는 사람
83	사출공	48,132	43,535	- 수지제품등을 사출기에 의하여 사출하는 사람
84	성형공	53,996	52,221	- 수지제품등을 성형기에 의하여 성형하는 사람
85	압출공	53,181	51,715	- 수지제품등을 압출기에 의하여 압출하는 사람
86	배합공	49,744	48,716	- 수지제품을 배합기에 의하여 배합하는 사람
87	가구공	53,217	51,767	- 가구를 제조하는 사람
88	유리제품제조공	47,048	45,851	-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람(초, 병, 장식용 등)
89	제재공	52,958	53,529	- 원목을 각재 또는 판재로 제작하는 사람
90	조성화학공	55,514	57,179	- 펄프를 분쇄·증해·고해 등 가공하는 사람
91	합판제조공	52,355	50,066	- 각종 합판류의 제조를 하는 사람
92	제재기계운전공	64,842	65,429	- 제재기계를 운전 또는 부분적인 고장을 보수할 수 있는 사람
93	목재건조기계공※	55,704	57,886	- 수건, 증기건, 전기건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사람
94	제지공	60,680	56,829	- 종이를 생산하는 사람
95	조선목공※	58,953	57,805	- 선박에 취급되는 목재를 가공하는 사람
96	골판지제조공	47,278	46,433	-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사람
97	부품조립공	48,434	47,018	- 중간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98	강전기계조립공※	56,168	57,597	- 교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99	약전기계조립공※	46,732	-	-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100	중기계조립공	62,290	62,621	- 가적이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101	경기계조립공	57,822	50,233	-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102	전자제품조립공	48,192	47,712	-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103	통신기계조립공	48,690	46,602	- 통신장비에 대한 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104	제품시험공	63,346	58,143	-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단위 : 원)

일련번호	직 종 명	2009.9월 조사노임	2008.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05	품질관리공	62,606	60,374	- 품질을 관리하는 기공
106	품질관리사	83,467	77,549	-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107	기계정비공	62,872	63,925	- 전문분야의 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사람
108	전기정비공	64,144	64,069	- 모터와 같은 간단한 전기시설을 고치는 전기기술자
109	차량정비공	77,790	68,314	- 차량 등의 정비사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자격소유자 밑에서 지시에 의하여 정비하는 사람
110	제품검사공	47,972	46,951	- 제품을 검사하는 사람
111	제품조정공	62,118	57,628	- 제품을 조정하는 사람
112	기계기술공	69,477	68,721	- 전문분야의 기계구조 및 성능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보수유지에 능한 사람
113	다듬질공	49,190	44,798	- 모든 제품을 끝손질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끝손질공)
114	보선공	65,668	61,446	- 기계의 배선 및 단선 등에 단선을 보강하는 사람
115	배관공	71,064	66,913	- 배관을 설치하는 사람
116	배선공	52,057	50,342	- 기기의 배선을 하는 사람
117	권선공-코일	47,353	46,537	- 계전기 트랜스 등의 코아에 코일을 권선하는 사람
118	목재포장공	53,055	49,453	- 목재로 포장상자를 제작하여 포장하는 목공
119	물품포장공	46,978	46,897	- 각종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각종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120	철강포장공	45,669	46,296	- 철제대강 또는 제철물을 포장하는 사람
121	제품출하공	54,175	51,897	- 물건을 싣고 내리는 사람
122	전산용지정합공	61,165	61,124	- 인쇄된 전산용지를 2장 이상 작업시 한세트로 정합하는 사람
123	스캔기능공	63,968	60,318	- 사진이나 그림인쇄시 색상(필림)을 분리하는 사람
124	교정사	60,674	56,166	-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확인작업을 하는 사람
125	전자편집디자인	72,396	68,812	-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획, 편집, 디자인하는 사람
126	스티카인쇄공※	71,263	66,100	- 스티카 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127	전자조판공	69,535	66,781	- 전자사식기(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128	사진제판공	62,934	61,925	- 사진을 인쇄하기 위하여 판을 짜는 사람
129	옵셋인쇄공	63,020	63,979	- 옵셋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130	인쇄동판제조공	62,928	64,449	- 인쇄하기 위하여 동판을 제조하는 사람
131	인쇄연판제조공※	67,928	69,061	- 인쇄하기 위하여 연판을 제조하는 사람

(단위 : 원)

일련번호	직 종 명	2009.9월 조사노임	2008.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32	제본공	60,767	60,573	- 인쇄된 종이를 종합정돈하고 꿰메어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
133	지류제단공	60,316	60,233	- 종이를 규격에 맞추어 자르는 사람
134	전자출판출력공	71,158	65,788	- 전자출판에서 필름을 출력하는 사람
135	활판인쇄공	65,252	57,421	- 활판인쇄기로 인쇄하는 사람
136	금박공	59,923	53,642	- 수첩에 글자금박을 넣는 사람
137	연포장재접합공	60,944	60,906	- 포장지에 금속은박지와 종이를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138	관권공	47,708	48,622	- 실을 코온(cone) 또는 치이즈(cheese) 등에 감는 사람
139	방직기계보전공	58,924	60,210	- 방직기계를 유지·보수하는 사람
140	스냅공	44,339	40,717	- 돗드달이 및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사람
141	연단공	48,201	44,799	- 원단을 재단대에 펼치거나 쌓아서 직물재단이용이하도록 정리하는 사람
142	연사공	45,344	42,824	- 생실을 비누나 잿물로 처리하거나 또는 연사공정에서 연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하는 사람
143	염직공	55,679	54,113	- 직물에 물을 들이는 사람
144	오바로그공	47,504	43,877	- 오바로그기로 오바로그 봉제하는 사람
145	이본침공	44,535	42,520	- 이본침봉제를 하는 사람
146	인타로그공	40,273	38,395	- 인타로그기에서 봉제품을 인타로그하는 사람
147	정경공	48,848	45,230	- 제직시 경사를 정경폭과 밀도에 따라 배열한 후 실을 감는 사람
148	재봉기운용사	45,888	46,697	- 재봉틀을 운전하는 사람
149	제화공	54,885	49,921	- 구두를 만드는 사람
150	직물재단공	50,094	49,865	- 직물을 모형대로 절단하거나 재단사를 보조하는 사람
151	직물재단사	55,723	53,160	- 직물을 소정규격대로 재단하는 사람
152	직포공	48,318	44,455	-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153	침염공	52,372	53,097	-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는 사람
154	편직공	46,184	47,605	- 니트직물을 짜는 사람
155	피혁공	51,886	47,563	- 피혁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람
156	상침공	43,871	42,643	- 동력재봉기로 재봉하는 사람
157	하침공	41,468	39,206	- 동력재봉기 옆에서 부품공급 다듬질 및 부품손질을 하는 보조자

(단위 : 원)

일련번호	직 종 명	2009.9월 조사노임	2008.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58	통신내외선공※	68,883	57,666	- 통신장비의 내·외부 배선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59	전기기사	82,417	82,046	- 전기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로서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전기기사 1급)
160	전기산업기사	80,193	73,599	- 전기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로서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전기기사 2급, 전기기능사 1급)
161	전기기능사	67,249	62,209	-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전기기능사 2급)
162	목공 및 유리공	58,748	57,709	- 애자(유리)를 절단하여 사용처에 보수하는 사람(목공도 이에 분류한다.)
163	컴퓨터H/W기사	108,674	95,245	-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164	컴퓨터S/W기사	97,376	86,162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165	컴퓨터운용사※	92,631	88,990	- 전산기를 운용 조정하는 사람
166	콘크리트제품 성형기운전공	60,502	58,534	-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압축진동성형기를 조작하고 부분적인 고장 등도 보수 할 수 있는 사람
167	중기운전사	62,994	62,099	- 기중기류, 권상기, 윈치(winch), 체인브럭, 콘베이어류, 에레베이터, 에스커레이터, 색도, 기타 중기류의 운전사
168	트레일러공※	61,810	51,450	- 천장레일을 이용하여 시멘트 반제품을 운반하는 사람
169	돌분쇄공※	60,202	48,229	- 돌을 분쇄시키는 사람
170	착암공※	64,545	68,220	- 돌을 깨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171	소성공	51,759	51,251	- 돌을 굽는 일을 하는 사람
172	인조석가공공※	61,434	54,351	- 인조대리석을 사용하여 제품(가구, 건축자재 등)을 생산하는 사람
173	폐수처리공	63,174	63,046	- 찌꺼기 등 오물을 폐수·처리하는 사람
174	식품제조공	46,411	43,147	- 빵・과자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175	보통인부	49,430	46,789	- 제조분야에 있어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
176	작업반장	72,019	68,305	-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하는 사람
177	안전관리사	85,469	78,351	- 생산상의 안전을 위해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178	벨트콘베이어 작업공	46,827	45,816	- 각종 콘베이어에서 작업하는 사람
179	보일러공	63,759	63,263	- 보일러를 제작,설치,정비 및 관리하는 사람
	전 체 평 균	54,638	52,388	

3. 중소제조업 임금현황

□ 임금산정 기준

○ '09. 9월 현재 중소제조업의 임금산정 기준(단위)을 보면, 생산직은 시급기준(46.0%)이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은 월급기준(64.9%)인 기업체가 가장 많았음.

- '08. 9월말 대비 생산직의 경우에 월급기준이 12.5%P 증가한 반면 시급기준과 일급기준이 각각 8.8%P 및 7.0%P 감소, 사무직의 경우는 월급기준이 5.7%P 증가한 반면, 연봉기준은 4.7%P 감소

직종별 임금산정 기준 (생산직)

(단위 : %)

	시 급	일 급	월 급	연 봉	기 타
2008년(A)	54.8	25.1	15.0	4.8	0.4
2009년(B)	**46.0**	**18.1**	**27.5**	**7.5**	**0.9**
증감 (B-A, %P)	△8.8	△7.0	12.5	2.7	0.5

직종별 임금산정 기준 (사무직)

(단위 : %)

	시 급	일 급	월 급	연 봉	기 타
2008년(A)	0.7	0.8	59.2	38.3	1.1
2009년(B)	**0.9**	**0.3**	**64.9**	**33.6**	**0.3**
증감 (B-A, %P)	0.2	△0.5	5.7	△4.7	△0.8

□ '09. 9월중 중소제조업 임금현황

○ '09. 9월 중 지급한 중소제조업(20~299인, 1,200개) 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은 전년 동월 대비 5.8% 상승한 1,957천원으로 나타났음.

- 월급여액 내역을 보면 기본급 비중이 71.7%, 그 다음으로 초과근로수당 16.8%, 제수당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를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기본급 비중이 줄어든 만큼(△1.2%P) 각 수당의 비중이 늘어났음

종사자 1인당 월급여액(상여금 등 특별급여 제외)

(단위 : 천원, %)

구 분	월급여액 (A+B+C)	기 본 급 (A)	제수당 (B)	초과근로수당 (C)	특별급여
2008. 9월	1,849(100.0)	1,348(72.9)	188(10.2)	313(16.9)	431
2009. 9월	1,957(100.0)	1,403(71.7)	225(11.5)	329(16.8)	338

주 1. 특별급여를 제외한 근로자 1인당 2009. 9월중 지급한 임금액 기준임.
2. ( )는 월급여액을 100으로 한 임금내역별 구성비임.

연도별 9월중 중소제조업 월급여액 추이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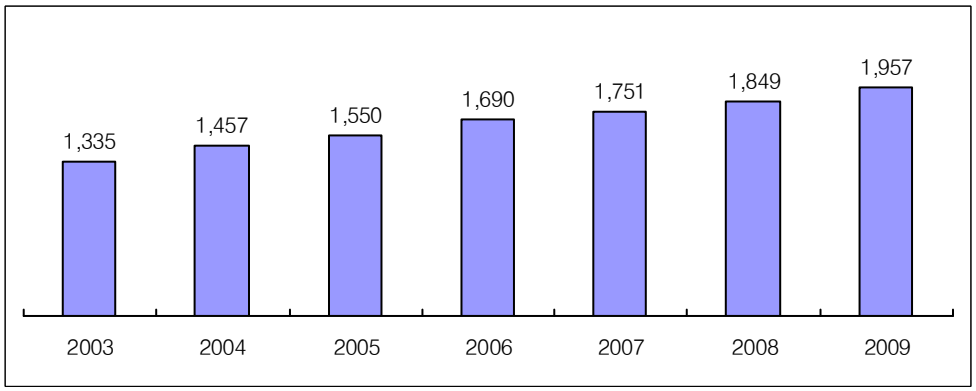

□ 종사자규모별 노조유무별 월급여액

○ **종사자 규모별**로는 20~49인 기업이 1,836천원, 50~99인 기업이 1,966천원, 100~299인 기업이 1,982천원으로 규모가 클수록 월급여액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

- 초과근로수당 또한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 **노조유무별로** 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월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종사자규모별, 기업유형별 월급여액('09. 9월)

(단위 : 천원, %)

구 분		월급여액 (A+B+C)	기본급 (A)	제수당 (B)	초과근로 수당(C)	특별급여	급여격차
중소제조업		1,957	1,403	225	329	338	-
종사자 규모별	20~49인	1,836	1,357	230	250	212	92.6
	50~99인	1,966	1,440	229	297	260	99.2
	100~299인	1,982	1,401	223	357	392	100.0
노 조 유무별	노조 유	2,054	1,448	234	372	464	100.0
	노조 무	1,921	1,386	222	313	290	93.5

주 : 특별급여를 제외한 근로자 1인당 2009. 9월중 지급한 월급여액 기준임.

□ 직종별 월급여액

○ **직종별**로 보면 생산직 근로자의 '09. 9월중 월급여액(특별급여 제외)은 1,753천원, 사무직 및 기타 근로자는 2,275천원으로 나타남.

- 사무직 및 기타 근로자의 월급여액수준을 100으로 하였을 때, 생산직 근로자의 월급여액수준은 77.1에 불과.

- 직종별 월급여액 구성내역을 보면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이 63.7%, 초과근로수당 24.8%이며, 사무직 및 기타의 경우 기본급 81.2%, 초과근로수당 7.2%로 나타남

- 기본급비중은 사무직 및 기타 81.2%, 초과근로수당 비중은 생산직 24.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직종별 월급여액 현황('09. 9월)

(단위 : 천원, %)

구 분		월급여액 (A+B+C)	기본급 (A)	제수당 (B)	초과근로수당(C)	급여격차 (사무직및기타=100)
중소제조업 (20~299인)		1,957 (100.0)	1,403 (71.7)	225 (11.5)	329 (16.8)	-
직종별	생 산 직	1,753 (100.0)	1,117 (63.7)	201 (11.5)	435 (24.8)	77.1
	사무직 및 기타	2,275 (100.0)	1,848 (81.2)	262 (11.5)	165 (7.2)	100.0

주 : ( )는 월급여액을 100으로 한 임금내역별 구성비임.

□ 업종별 월급여액

○ '09. 9월중 중소제조업 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특별급여 제외)을 업종별로 보면「기타운송장비업」이 2,285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화학물질및화학제품업」(2,170천원),「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업」(2,152천원),「기타기계및장비업」(2,142천원),「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2,076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소제조업 전체 월평균 급여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 업종은「의복,의복악세사리및모피제품업」(1,609천원),「식료품업」(1,610천원),「섬유제품업」(1,682천원),「가죽,가방및신발업」(1,776천원),「기타제품업」(1,874천원),「전기장비업」(1,911천원),「고무및프라스틱제품업」(1,911천원) 등으로 조사됨

중소제조업 업종별 월급여액('09. 9월)

(단위 : 천원)

월급여액 평균 : 1,95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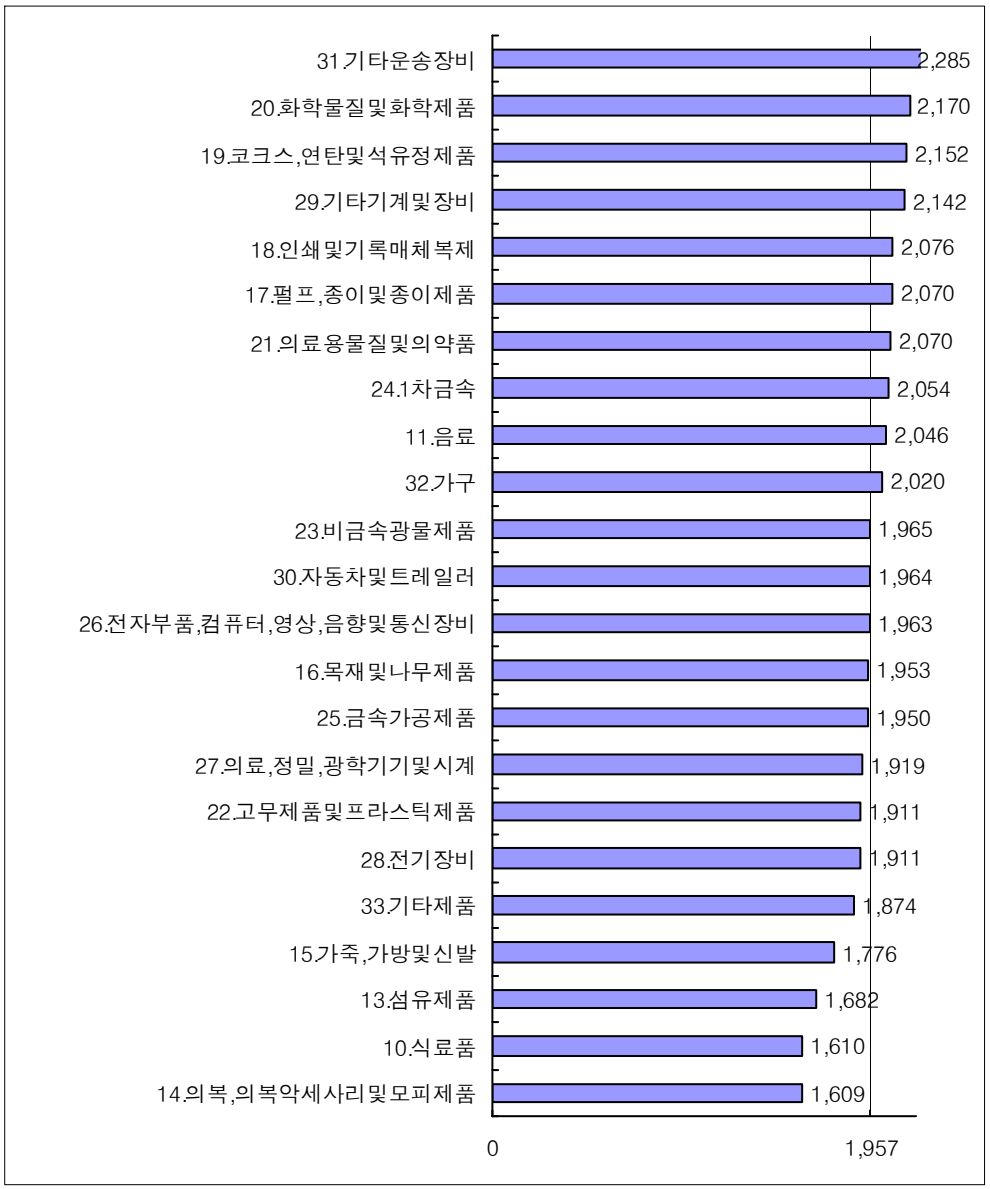

주 : 특별급여를 제외한 근로자 1인당 2009. 9월중 지급한 월급여 기준임.

Ⅲ. 부　　록

◇ 통　계　표

◇ 조　사　표

1. '09. 9월 중 중소제조업 월급여현황(전체)

(단위 : 원)

구 분		월급여액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초과수당	특별급여
D	제 조 업	1,957,398	1,402,793	144,725	80,905	328,975	338,208
	20 ~ 49인	1,836,302	1,356,591	154,352	75,545	249,814	212,345
	50 ~ 99인	1,966,430	1,440,044	146,838	82,403	297,144	260,111
	100 ~299인	1,982,040	1,401,290	141,852	81,641	357,257	392,044
	노조가 있는 기업	2,053,541	1,447,863	127,489	106,541	371,648	463,585
	노조가 없는 기업	1,920,783	1,385,629	151,288	71,142	312,724	290,462
	일 반 기 업	1,960,065	1,404,603	141,312	80,199	333,951	358,481
	혁 신 형 기 업	1,947,851	1,396,315	156,937	83,432	311,167	265,667
10	식 료 품	1,609,608	1,163,569	125,711	62,509	257,820	216,400
11	음 료	2,045,626	1,452,054	155,331	83,451	354,789	134,350
13	섬 유 제 품	1,681,530	1,201,406	81,738	73,299	325,088	253,915
14	의복,악세사리,모피	1,609,056	1,191,572	127,416	52,151	237,916	150,856
15	가 죽 , 가 방 , 신 발	1,776,448	1,337,364	124,464	76,404	238,215	143,787
16	목 재 및 나 무 제 품	1,952,506	1,287,933	141,749	59,551	463,274	468,043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	2,070,408	1,406,484	143,102	81,639	439,182	596,677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	2,075,712	1,599,464	109,339	99,272	267,637	315,623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2,152,186	1,655,687	147,481	101,441	247,577	585,376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2,170,434	1,638,049	177,985	80,745	273,655	626,964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2,070,194	1,787,493	101,298	93,372	88,030	515,690
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	1,911,207	1,316,410	132,720	92,377	369,700	300,717
23	비 금 속 광 물 제 품	1,965,215	1,314,279	151,598	106,469	392,868	306,264
24	1 차 금 속	2,053,678	1,265,889	216,157	102,179	469,453	450,766
25	금 속 가 공 제 품	1,949,642	1,296,319	160,766	108,117	384,440	248,857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1,962,537	1,494,319	165,219	75,818	227,182	258,487
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1,918,591	1,529,153	125,675	64,957	198,806	126,216
28	전 기 장 비	1,911,035	1,378,182	125,413	73,468	333,972	291,309
29	기 타 기 계 및 장 비	2,141,634	1,543,800	163,291	108,461	326,082	342,522
30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1,963,543	1,294,507	130,641	66,711	471,684	496,785
31	기 타 운 송 장 비	2,285,343	1,523,734	168,487	80,938	512,185	302,968
32	가 구 제 조	2,019,932	1,504,183	106,938	82,943	325,868	222,930
33	기 타 제 품	1,874,226	1,341,087	190,952	72,629	269,558	207,134

주 : 1) 월급여액=(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초과수당)
2)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1-1. '09. 9월 중 중소제조업 월급여현황(생산직)

(단위 : 원)

구 분		월급여총액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초과수당	특별급여
D	제 조 업	1,753,022	1,116,796	128,429	73,253	434,544	311,644
	20 ~ 49인	1,638,169	1,106,199	141,249	66,568	324,153	186,789
	50 ~ 99인	1,746,516	1,131,827	126,687	81,677	406,326	251,594
	100 ~299인	1,780,614	1,114,589	126,099	72,183	467,744	357,748
	노조가 있는 기업	1,876,414	1,163,803	124,144	94,272	494,194	449,584
	노조가 없는 기업	1,703,886	1,098,077	130,135	64,883	410,791	256,716
	일 반 기 업	1,762,980	1,123,824	127,229	73,279	438,648	325,033
	혁 신 형 기 업	1,714,069	1,089,307	133,120	73,151	418,490	259,278
10	식 료 품	1,447,397	976,911	98,180	43,916	328,390	179,991
11	음 료	1,776,949	1,104,672	157,297	97,536	417,445	104,174
13	섬 유 제 품	1,579,048	1,079,825	73,547	63,802	361,874	234,084
14	의복,악세사리,모피	1,320,080	949,800	105,283	28,867	236,129	80,368
15	가 죽 , 가 방 , 신 발	1,563,199	1,058,062	93,875	76,491	334,771	166,872
16	목 재 및 나 무 제 품	1,847,456	1,091,020	141,827	63,056	551,552	364,151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	2,029,200	1,216,300	153,796	84,725	574,379	635,609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	1,964,767	1,403,400	91,796	88,998	380,574	293,202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1,951,165	1,304,647	144,452	104,178	397,888	311,997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1,930,461	1,284,551	128,795	84,890	432,226	626,874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1,749,096	1,435,420	116,103	48,840	148,733	504,603
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	1,758,146	992,108	151,001	109,630	505,406	248,746
23	비 금 속 광 물 제 품	1,746,747	1,047,215	135,152	106,408	457,971	245,803
24	1 차 금 속	1,874,014	1,020,451	193,343	108,619	551,602	450,124
25	금 속 가 공 제 품	1,831,163	1,076,443	140,189	127,185	487,346	233,935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1,545,800	1,013,027	151,141	64,118	317,514	216,894
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1,480,655	1,059,499	93,787	52,880	274,489	108,872
28	전 기 장 비	1,671,316	1,049,442	104,139	70,389	447,346	265,531
29	기 타 기 계 및 장 비	1,969,665	1,255,845	139,704	93,290	480,826	328,219
30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1,818,724	1,022,817	109,532	60,732	625,644	458,024
31	기 타 운 송 장 비	2,196,935	1,384,807	152,522	62,322	597,283	256,535
32	가 구 제 조	1,731,500	1,136,401	94,106	61,135	439,859	290,485
33	기 타 제 품	1,669,530	1,099,482	177,948	42,736	349,364	224,511

주 : 1) 월급여액=(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초과수당)
2)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1-2. '09. 9월 중 중소제조업 월급여현황(사무직및기타)

(단위 : 원)

구 분		월급여총액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초과수당	특별급여
D	제 조 업	2,275,403	1,847,867	170,014	92,811	164,711	379,541
	20 ~ 49인	2,140,610	1,741,274	174,367	89,331	135,638	251,597
	50 ~ 99인	2,273,139	1,869,908	174,943	83,417	144,871	271,990
	100 ~299인	2,307,864	1,865,133	167,254	96,941	178,536	447,520
	노조가 있는 기업	2,353,376	1,928,710	133,151	127,310	164,205	487,286
	노조가 없는 기업	2,247,752	1,819,198	183,086	80,577	164,891	341,333
	일 반 기 업	2,282,033	1,863,376	164,241	91,503	162,913	413,125
	혁 신 형 기 업	2,254,576	1,799,151	188,147	96,920	170,357	274,050
10	식 료 품	1,876,068	1,470,186	170,935	93,051	141,896	276,206
11	음 료	2,338,549	1,830,788	153,187	68,096	286,479	167,250
13	섬 유 제 품	2,048,784	1,637,539	110,648	107,334	193,263	324,981
14	의복,악세사리,모피	2,049,808	1,560,328	161,175	87,665	240,640	258,365
15	가 죽 , 가 방 , 신 발	2,135,290	1,807,355	175,938	76,258	75,739	104,942
16	목 재 및 나 무 제 품	2,142,802	1,644,636	141,606	53,201	303,359	656,239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	2,157,319	1,807,599	120,548	75,132	154,039	514,565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	2,205,083	1,828,093	129,796	111,252	135,942	341,769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2,339,605	1,982,973	150,305	98,889	107,438	840,255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2,440,889	2,036,449	233,424	76,074	94,941	627,067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2,316,838	2,057,930	89,927	127,578	41,403	524,207
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	2,141,626	1,804,615	105,199	66,404	165,408	378,955
23	비 금 속 광 물 제 품	2,477,677	1,942,279	188,631	106,612	240,155	448,088
24	1 차 금 속	2,448,332	1,805,026	266,271	88,034	289,001	452,178
25	금 속 가 공 제 품	2,164,917	1,695,829	198,155	73,471	197,462	275,970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2,431,312	2,035,709	181,055	88,980	125,569	305,274
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2,466,159	2,116,378	165,545	80,058	104,178	147,901
28	전 기 장 비	2,267,291	1,866,736	157,029	78,044	165,482	329,619
29	기 타 기 계 및 장 비	2,314,888	1,833,907	187,054	123,745	170,182	356,931
30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2,210,902	1,758,566	166,696	76,925	208,714	562,991
31	기 타 운 송 장 비	2,545,472	1,932,505	215,459	135,712	261,796	439,590
32	가 구 제 조	2,370,287	1,950,924	122,525	109,433	187,405	140,871
33	기 타 제 품	2,230,564	1,761,676	213,591	124,667	130,630	176,882

주 : 1) 월급여액=(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초과수당)
2)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2. 종사자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업체수	20인~49인	50인~99인	100인~299인
D	제 조 업	1,200	40.6	25.6	33.8
	노조가 있는 기업	192	4.7	20.3	75.0
	노조가 없는 기업	1,008	47.4	26.7	25.9
	일 반 기 업	932	40.7	24.4	35.0
	혁 신 형 기 업	268	40.3	30.2	29.5
10	식 료 품	77	35.1	19.5	45.5
11	음 료	26	46.2	42.3	11.5
13	섬 유 제 품	48	43.8	27.1	29.2
14	의복,악세사리,모피	80	48.8	26.3	25.0
15	가 죽 , 가 방 , 신 발	45	48.9	33.3	17.8
16	목 재 및 나 무 제 품	34	61.8	17.6	20.6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	54	35.2	24.1	40.7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	40	60.0	27.5	12.5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6	50.0	50.0	-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73	30.1	28.8	41.1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42	11.9	35.7	52.4
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	54	48.1	24.1	27.8
23	비 금 속 광 물 제 품	59	47.5	20.3	32.2
24	1 차 금 속	61	34.4	29.5	36.1
25	금 속 가 공 제 품	61	55.7	19.7	24.6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69	26.1	29.0	44.9
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50	42.0	28.0	30.0
28	전 기 장 비	62	32.3	25.8	41.9
29	기 타 기 계 및 장 비	51	45.1	21.6	33.3
30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66	22.7	25.8	51.5
31	기 타 운 송 장 비	55	27.3	23.6	49.1
32	가 구 제 조	45	66.7	15.6	17.8
33	기 타 제 품	42	50.0	26.2	23.8

주 :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3. 노동조합 결성유무

(단위 : 개, %)

구 분		업체수	노조	비노조
D	제 조 업	1,200	16.0	84.0
	20 ~ 49인	487	1.8	98.2
	50 ~ 99인	308	12.7	87.3
	100 ~299인	405	35.6	64.4
	일 반 기 업	932	16.7	83.3
	혁 신 형 기 업	268	13.4	86.6
10	식 료 품	77	15.6	84.4
11	음 료	26	23.1	76.9
13	섬 유 제 품	48	22.9	77.1
14	의복,악세사리,모피	80	6.3	93.8
15	가 죽 , 가 방 , 신 발	45	2.2	97.8
16	목 재 및 나 무 제 품	34	8.8	91.2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	54	24.1	75.9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	40	17.5	82.5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6	16.7	83.3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73	34.2	65.8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42	26.2	73.8
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	54	14.8	85.2
23	비 금 속 광 물 제 품	59	16.9	83.1
24	1 차 금 속	61	19.7	80.3
25	금 속 가 공 제 품	61	13.1	86.9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69	11.6	88.4
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50	10.0	90.0
28	전 기 장 비	62	14.5	85.5
29	기 타 기 계 및 장 비	51	17.6	82.4
30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66	24.2	75.8
31	기 타 운 송 장 비	55	10.9	89.1
32	가 구 제 조	45	6.7	93.3
33	기 타 제 품	42	7.1	92.9

주 :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4. 기업유형

(단위 : 개, %)

구 분		업체수	일반기업	혁신형기업
D	제 조 업	1,200	77.7	22.3
	20 ~ 49인	487	77.8	22.2
	50 ~ 99인	308	73.7	26.3
	100 ~299인	405	80.5	19.5
	노조가 있는 기업	192	81.3	18.8
	노조가 없는 기업	1,008	77.0	23.0
10	식 료 품	77	85.7	14.3
11	음 료	26	92.3	7.7
13	섬 유 제 품	48	79.2	20.8
14	의복,악세사리,모피	80	91.3	8.8
15	가 죽 , 가 방 , 신 발	45	91.1	8.9
16	목 재 및 나 무 제 품	34	91.2	8.8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	54	88.9	11.1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	40	100.0	-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6	66.7	33.3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73	79.5	20.5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42	69.0	31.0
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	54	81.5	18.5
23	비 금 속 광 물 제 품	59	86.4	13.6
24	1 차 금 속	61	75.4	24.6
25	금 속 가 공 제 품	61	65.6	34.4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69	66.7	33.3
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50	50.0	50.0
28	전 기 장 비	62	66.1	33.9
29	기 타 기 계 및 장 비	51	62.7	37.3
30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66	59.1	40.9
31	기 타 운 송 장 비	55	83.6	16.4
32	가 구 제 조	45	77.8	22.2
33	기 타 제 품	42	83.3	16.7

주 :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5. 임금산정 기준(생산직)

(단위 : %)

구 분		업체수	시 급	일 급	월 급	연 봉	기 타
D	제 조 업	1,200	46.0	18.1	27.5	7.5	0.9
	20 ~ 49인	487	42.3	15.6	33.3	7.8	1.0
	50 ~ 99인	308	42.9	19.2	27.6	9.1	1.3
	100 ~299인	405	52.8	20.2	20.5	5.9	0.4
	노조가 있는 기업	192	43.8	27.1	24.5	3.6	1.0
	노조가 없는 기업	1,008	46.4	16.4	28.1	8.2	0.9
	일 반 기 업	932	44.1	20.1	28.1	6.7	1.1
	혁 신 형 기 업	268	52.6	11.2	25.4	10.4	0.4
10	식 료 품	77	51.9	14.3	32.5	1.3	-
11	음 료	26	26.9	11.5	57.7	3.8	-
13	섬 유 제 품	48	52.1	12.5	27.1	6.3	2.1
14	의복,악세사리,모피	80	30.0	17.5	37.5	13.8	1.3
15	가 죽 , 가 방 , 신 발	45	44.4	15.6	33.3	6.7	-
16	목 재 및 나 무 제 품	34	41.2	32.4	23.5	2.9	-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	54	51.9	22.2	22.2	1.9	1.9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	40	15.0	10.0	55.0	20.0	-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6	16.7	16.7	66.7	-	-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73	39.7	8.2	41.1	11.0	-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42	7.1	14.3	69.0	9.5	-
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	54	68.5	9.3	13.0	7.4	1.9
23	비 금 속 광 물 제 품	59	52.5	13.6	25.4	1.7	6.8
24	1 차 금 속	61	52.5	32.8	13.1	1.6	-
25	금 속 가 공 제 품	61	54.1	18.0	16.4	9.9	1.6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69	44.9	17.4	23.2	14.5	-
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50	46.0	16.0	22.0	16.0	-
28	전 기 장 비	62	46.8	24.2	24.2	3.2	1.6
29	기 타 기 계 및 장 비	51	35.3	35.3	21.6	7.8	-
30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66	66.7	19.7	10.6	1.5	1.5
31	기 타 운 송 장 비	55	70.9	10.9	10.9	7.3	-
32	가 구 제 조	45	51.1	24.4	17.8	6.7	-
33	기 타 제 품	51	35.7	21.4	31.0	11.9	-

주 :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6. 임금산정 기준(사무직및기타)

(단위 : %)

구 분		업체수	시 급	일 급	월 급	연 봉	기 타
D	제 조 업	1,198	0.9	0.3	64.9	33.6	0.3
	20 ~ 49인	485	1.2	0.2	68.2	29.9	0.4
	50 ~ 99인	308	0.6	0.3	60.7	38.3	-
	100 ~ 299인	405	0.7	0.5	64.2	34.3	0.2
	노조가 있는 기업	191	0.5	-	65.4	33.5	0.5
	노조가 없는 기업	1,007	1.0	0.4	64.8	33.6	0.2
	일 반 기 업	930	0.8	0.2	67.5	31.3	0.2
	혁 신 형 기 업	268	1.5	0.7	56.0	41.4	0.4
10	식 료 품	77	1.3	-	74.0	24.7	-
11	음 료	25	-	-	56.0	44.0	-
13	섬 유 제 품	48	2.1	-	79.2	16.7	2.1
14	의복,악세사리,모피	79	1.3	-	74.7	24.1	-
15	가죽,가방,신발	45	-	-	64.4	35.6	-
16	목재및나무제품	34	-	-	73.5	26.5	-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	54	-	-	70.4	27.8	-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	40	-	-	65.0	35.0	-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6	-	-	66.7	33.3	-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73	4.1	-	57.5	38.4	-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42	-	-	57.1	42.9	-
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	54	3.7	-	55.6	40.7	-
23	비금속광물제품	59	-	1.7	64.4	33.9	-
24	1 차 금 속	61	-	-	75.4	24.6	-
25	금속가공제품	61	-	1.6	63.9	34.4	-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69	-	-	42.0	58.0	-
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50	-	2.0	46.0	52.0	-
28	전 기 장 비	62	1.6	-	62.9	33.9	1.6
29	기타기계및장비	51	2.0	-	64.7	33.3	-
30	자동차및트레일러	66	-	-	69.7	30.3	-
31	기타운송장비	55	-	-	87.3	12.7	-
32	가 구 제 조	45	2.2	-	48.9	48.9	-
33	기 타 제 품	42	-	2.4	69.0	28.6	-

주 :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승인(협의)번호
제 34005 호

2009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Kbiz 중소기업중앙회

ID	지 역	일련번호	산업분류	규 모
※ 위 사항은 본회 지역본부에서 작성합니다.				

■ 이 조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서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을 할 때 생산직 근로자의 노무비 산정 기준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1. 일반사항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노동조합	① 유 ②무				
기업유형	①일반기업 ②이노비즈,경영혁신,벤처기업			전 화	)	팩 스	)

종사자수(명)	생산직 (①)	사무직및 기타(②)	합 계 (①+ ②)
임시(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 산업기능요원			
상시근로자			
합 계			

2. 급여총액(2009. 9월중 지급한 임금, 1개월이상 고용된 근로자만 대상으로 기재)

(단위 : 명, 원)

직종 구분	상시근로자	9월 급여총액 (①+②+③+④+⑤)	기본급(본봉) (①)	통상적 수당 (②)	기타수당 (③)	초과근로수당 (④)	특별급여 (상여금 등)(⑤)
생 산 직							
사무직및기타							
합 계							

○ 2009. 9월중 지급한 근로자의 급여총액을 기재하되 1개월 미만의 임시(일용직) 근로자, 대표자(임원),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합니다.

○ 통상적 수당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기타수당은 통상적 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제수당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 등)

○ 초과근로수당은 정상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특별급여는 급여지급 관련규정과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2-1. 귀사의 임금산정 기준(단위)은 ? ☞ **생산직 ( )** ☞ **사무직 및 기타 ( )**

① 시급 ② 일급 ③ 주급 ④ 월급 ⑤ 연봉 ⑥ 기타( )

3. 2009. 9월중 지급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초과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직종 코드	직 종 명 (※붙임참조)	총인원	총근로일수 (①)	총지급액 (②+③)	기본급 (②)	통상적 수당 (③)	평균일급 (②+③/①)	최고일급	최저일급
합 계									
신규직종 해설									

조사응답자	성 명	소속부서	전화번호	e-mail	조사원	조사책임자
					㊞	㊞

♠ 조사에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동조사결과는 http://stat2.smba.go.kr/index.js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발행일 : 2009년 12월 일

발행인 : 김 기 문

발행처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 조사통계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전 화 : 02-2124-3211~6

F A X : 02-785-0199

인 터 넷 : www.kbiz.or.kr

E-Mail : stat@kbiz.or.kr

인 쇄 : 성지문화사 (☎ 02-2273-5090)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팀(과장 이창희, 02-2124-3211)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